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15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5. 10.

기획재경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10. 23.

기획재경위원회

1. 검토과정

- 안 건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이영빈 의원 외 8명(황국주, 고명욱, 정순옥, 최홍린, 권숙자, 서보영, 임미연, 장호섭)
- 발의일자: 2025. 10. 16.(목)
- 회부일자: 2025. 10. 16.(목)
- 검토기간: 2025. 10. 16.(목) ~ 10. 17.(금)

2. 제안이유

- 공모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사전타당성을 심의하는 공모사업 사전심의위원회를 두어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공모를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모사업의 사전검토를 위하여 공모사업 사전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심의대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위원회를 15명 이내로 하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7조)
- 위원회의 회의 소집 및 의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심의대상 공모사업 관련예산을 편성할 경우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9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
 - 「지방자치법」 제130조
- 비용추계서: 비대상
- 입법예고(2025. 10. 16. ~ 10. 21.)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재정운용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구성된 건전재정확립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과도한 공모사업 추진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와 행정의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우리 구의 공모 및 평가사업은 2022년 121건, 2023년 108건, 2024년 113건으로 추진되었으며, 이 중 구비 1억원 이상이 투입된 사업은 각각 13건, 6건, 10건으로 연도별 변동이 있는 편임.
- 주요내용으로
 - 안 제6조는 공모사업 추진 시 공모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재정협약, 사업효과 등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공모사업 사전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심의 대상사업으로 구가 신청한 구비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과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한 사업 중 구비 5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고,
 -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구의회 의원 3명과 전문가 3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 안 제9조는 공모사업 추진 시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던 절차를 개선하여 공모사업 예산을 편성할 경우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변경하였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모사업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공모사업 사전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무분별한 공모사업 신청을 예방하고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공모사업을 선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 구 재정의 건전성 강화와 정책의 일관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등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연도별 우리 구 공모 및 평가사업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연도별	사업 건수	사업비					구비 1억원 이상 사업 건수
		계	국비	시비	구비	기타	
2024년	113	81,977	42,279	19,299	19,973	426	10
2023년	108	53,491	32,087	14,495	2,421	4,488	6
2022년	121	50,057	28,812	11,403	8,772	1,070	13
2021년	140	26,230	14,909	5,845	5,279	197	10
2020년	121	46,458	26,584	9,133	10,334	407	15

※ 자료의 수치는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 〉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현행조례】

□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 부서를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 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모사업의 사전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 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
 -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대구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
 -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
 - 다. 사업의 구체성 및 사업 규모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 라.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
3. 재정협의를
 - 가. 국비·시비·구비의 재원 비율
 - 나. 구비 재원 확보 방안
 -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4. 사업효과
 -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나. 구체적 효과 및 전망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회보고)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모사업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보고해야 한다.

1. 구가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구비 1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

2.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 5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5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상의 이유로 정보 유출의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비공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